

## EU 사탕정책개혁 제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05년 6월 22일 사탕의 공동시장조직(Common Market Organization)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제안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EU 사탕부문의 경쟁력과 시장 지향성을 높일 수 있고, 세계 시장에서의 교섭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이익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집행위원회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EU는 거의 4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현행 시스템을 현대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하더라도 개도국에 대해 세계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보장해 주는 특혜 시장접근(preferential access)은 여전히 유효할 전망이다.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 국가군(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ACP)들은 이전부터 원조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EU에 사탕을 수출하면서 이익을 얻어 왔는데,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관행도 인정하기로 했다.

집행위원회의 개혁안은 두 단계에 걸쳐 백설탕 가격을 총 39% 인하하는 대신,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de-coupled) 직불금을 통해서 가격 인하분의 60%를 생산자에게 상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환경 및 토지 관리 기준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단일직불제(Single Farm Payment)에 추가될 것이다.

또한 4년 동안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기간을 두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가들이 전업할 기간을 마련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정부 개입을 완전히

철폐할 것이다. ACP 지원계획에 따라 2006년에 4,000만€를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5년 11월에 열리는 농업 이사회(Agricultural Council)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농업 및 농촌개발 집행위원인 Mariann Fischer Boe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도 높은 개혁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손쉬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방법을 사용한다면 유럽의 사탕부문은 서서히 고사할 것입니다. 저는 EU의 사탕 생산자들이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를 한다면 장래에도 경쟁력을 지닌다고 확신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초계획을 제시하고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생산자들이 전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구조조정 자금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EU는 제3세계의 전통적인 사탕 공급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특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EU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개발 및 인도적 지원 집행위원인 Louis Michel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EU의 사탕개혁이 ACP 교역 상대국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EU가 제시한 지원 계획안은 ACP 국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에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1. 개혁의 필요성

2003~04년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의 결과로 사탕부문도 다른 부문과 같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사탕부문 개혁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소비자의 요구와 사탕 가공산업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개혁은 EU 사탕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시장 지향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시장과의 교역에서 지속가능한 시장 균형을 이루어야 한

다. 집행위원회는 사탕시장을 상세하게 연구해 왔고, 가능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탕부문 개혁의 영향 평가에 따르면 현상 유지를 통해서만 사탕부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할당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생산성이 높은 농가일수록 더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EU 사탕 생산자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확신을 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혁안은 2014/15년까지 재심(review clause) 없이 사탕부문의 경제적·법적 기본틀을 유지한다. 집행위원회는 4년간 지급되는 구조조정 기금과 실질적인 2단계 가격삭감 병용을 제안하고 있다. 구조조정기금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가들의 전업이나 이탈 촉진, 공장 폐쇄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상쇄할 기금 제공, 그리고 개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에 새로운 사업을 도입할 자금제공이 그것이다.

## 2. ACP 국가들에 대한 지원 계획안

EU를 주요 시장으로 삼아 왔던 ACP 국가들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개혁 이후 EU는 Sugar Protocol을 준수하여 유럽시장에 대한 특혜적 시장접근을 허용할 것이고, 여전히 이들 국가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남을 것이다. 동시에 EU 집행위원회는 ACP 국가에 대해 지원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EU는 사탕부문 개혁이 EU 사탕수수 및 사탕 생산자만이 아니라 많은 ACP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집행위원회의 지원 계획안은 폭넓은 사회·경제·환경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여러 국가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18개 ACP 국가가 Sugar Protocol 하에서 EU에 사탕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EU 시장의 가격 삭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적응 기

간 동안 이들 국가를 지원해야 하는 집행위원회의 의무는 2004년 7월 회담에서 통합되었고, 2005년 1월 'Action Plan' 이후 ACP 국가와의 회담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2006년부터 이러한 지원 계획안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는 이러한 국가에 대한 투자를 빨리할수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과정이 복잡하고 국가 별로 적용 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2006년 계획안은 8년간의 장기 계획안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2006년에 초기 자금으로 4,000만€를 출자할 것이고, 2007~13년에 추가적인 장기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 3. EU 사탕 부문 개혁안의 세부 사항

- (1) 2006/07년부터 2년 동안 이루어지는 39%의 가격 삭감으로 지속가능한 시장 균형을 보장
- (2) 삭감분의 60%를 생산자에게 보상
- (3) 사탕 할당제(sugar quotas)를 포함한 새로운 사탕 체제(sugar regime)는 2014/15년까지 유효하고 이 기간 동안 재심 없음
- (4) A/B 타입의 할당제를 단일 생산 할당제로 통합
- (5) 정부개입시스템 폐지 및 개입가격을 기준가격(reference price)로 대체
- (6) 사영 저장 시스템(private storage system) 도입을 통한 안전망 조성(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 (7) 사탕 공장, 사탕 대용품(isoglucose), 저장 다당류(inulin) 생산자에게 4년 동안 자발적 구조조정 계획안 적용(지불금액은 1년차에 730€/톤, 2년차에 625€/톤, 3년차에 520€/톤, 4년차에 420€/톤)
- (8) 자신이 출하권(delivery rights)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 폐쇄될 경우 영향을 받을 사탕수수 생산자에게 첫 해에 최고 수준의 지불금 지급
- (9) 사탕수수를 비식용 작물로 재배할 경우 휴경지불금을 받을 수 있고,

에너지 작물 지원금으로 ha당 45€를 받을 수 있음

(10) 화학제품·약용 산업에 쓰이는 사탕은 생산 할당량에서 제외

(11) 현재 생산 기업들로 하여금 3년 동안 사탕 대용품을 매년 10만 톤씩  
추가 생산하도록 하여 사탕 대용품 할당량을 30만 톤 증량

출처: EU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

KREI